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06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9.

발의자 : 김도읍 · 성일종 · 정태옥
최연혜 · 곽대훈 · 윤한홍
이만희 · 윤영석 · 정갑윤
염동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전자검사기관이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,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

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6항 신설).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5항 중 “제5조”를 “제8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(유전자검사기관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검사기관이 「부가가치세법」 제<u>5</u>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49조(유전자검사기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<u>제</u> <u>8</u>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